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1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7. 3. 9.(목) 10: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1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7년 제1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4차, 제5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3월 7에 있었던 제10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의결사항

나.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2017-11-048)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를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주)래디우스랩, (주)오원, (주)제로웹 3개 법인을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고, 아래의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과하고자 합니다. 허가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17년도 제1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법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주요경과입니다. 2017년 1월 6일부터 20일까지 허가신청 공고에 따라 씨애플에스 등 총 4개 법인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허가 신청법인 주요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허가 심사위원회를 재무·영업·기술 분야의 전문가 총 9명으로 아래 <표>에 있는 바와 같이 구성하고, 2월 10일에 허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 허가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은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고시)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위치정보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보호 관련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였고, 총점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획득 시 적격 판정을 하고, 신청법인 임원에 대해서는 위치정보법 제6조에 따라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

리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주)래디우스랩, (주)오원, (주)제로웹 3개 법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총점 68.24를 받은 (주)씨애플에스 1개 법인에 대해서는 총점 70점 미달로 부적격을 판단하였습니다. GPS 단말기를 이용해 고정밀 골프 거리측정 정보를 제공하는 (주)씨애플에스는 위치정보시스템의 데이터처리 등 운영계획 미흡, 인적보안 등 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미흡, 개인위치정보의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미흡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참고로 (주)오원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단 총점 71.42점을 부여하면서 '15년 결산 기준으로 자본이 잠식되어서 재무구조의 건전성, 자본잠식 해소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사무처에서 (주)오원의 재무사항을 추가로 확인·점검한 결과, 작년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1억원 자금을 지원받고 금년에는 자본금 4억원을 추가로 증자하여 2월 27일 현재 납입자본금 총 6억원으로 등기가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신한카드 등과 커넥티드카 커머스 시장 개척을 위한 MOU 체결 예정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허가신청법인별 세부 심사결과는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허가조건입니다. 위치정보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의결주문과 같이 허가조건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허가 심사결과를 바로 통보하고 매년 또는 반기별로 허가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들 없으십니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오원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앞에 공단이나 이런 데서 자금지원도 받고 또 증자도 했다는 데 기본적으로 계획서 제출한 것이 2016년 것만 한 것입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2015년 결산 기준으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2015년이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세부심사기준 채점표에 보면 64.83점 해서 재무구조의 적정성이 포함된 심사사항이 60점 이상은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이 4점에 2.7점이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8점에 3.72점인데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2016년에 자금 지원을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나 2017년 2월에 증자 4억원을 한 것들이 제가 보기에 총자산 영업이익률이나 부채비율이나 이런 데는 반영될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전반적인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

성이나 <마> 자금조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 이런 측면에서 점수로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수가 앞에 설명한 내용과 갭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오원에서 자료 제출하거나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돼서 자료로 제출이 안 됐던 것입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자료로 제출이 안 됐고 추후에 저희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개별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했고, 또 이기주 위원님 지적했던 오원이 비록 합격점수는 받았으나 재무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충분히 했고, 오늘 안건을 보면 그 부분들에 대한 점점들을 충분히 보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게 안건을 올린 것 같습니다. 안건에 대한 의견은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위원회가 작년부터 쪽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지요? 위치정보사업자 활성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작년 연초에도 의욕적으로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는데 사실 제3기 방통위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보면 큰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제3기 방통위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와 관련된 마지막 안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동안 쪽 이 업무를 해 오셨으니까 작년부터 저희가 주력으로 했던 위치정보사업 활성화 관련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것을 진행했고 또 아쉬운 점이 무엇이고 이것을 간단히 언급해 주시지요.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위치정보 활성화 계획을 작년 1월에 발표하고 그에 따라서 위치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핵심 사업으로서는 중소 영세사업자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을 핵심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외 위치정보사업자들 법·제도나 경영적인 컨설팅 그리고 허가 지원 사업, 허가나 신고할 때 지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하고 조금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모전 부분에 있어서는 늦게 공모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6개 사업자

를 저희가 시상하고 특히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업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특허출원들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시적인 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시작했던 위치정보사업 활성화를 올해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도 국회에서 10억원 더 증액받아서 올해 사업을 더 확대하고자 하고 있고, 위치정보 활성화 계획 자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들, 또 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업자가 원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수요를 올해는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성과는 성과대로 더 발전시켜 주시고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애초에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위치정보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새로운 신산업이라는 것은 정부 주도보다는 사업자 주도로 이루어져야지만 나중에 제대로 성장해서 여러 가지 유익한 기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가 그와 같은 동기부여, 계기를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또 그 사업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 후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올해는 좀 더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한 실질적인 계획들이 수립되고 보다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일정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도 필요하겠습지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희들이 꾸준히 이런 지원을 하다 보면 또 아주 훌륭한 세계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앞으로 명성을 날릴 수 있는 기업이 나오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가. 2017년도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2017-11-047)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7년도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승인유효기간이 ‘17년 3월 12일 만료되는 (주)와이티엔에 대해 <붙임 1>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승인하고, 승인유효기간은 ‘17년 3월

13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승인유효기간이 '17년 3월 31일 만료되는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 <붙임 2>와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승인하고, 승인유효기간은 '17년 4월 1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승인유효기간이 '17년 3월 12일 만료되는 (주)와이티엔과 '17년 3월 31일 만료되는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한 재승인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입니다. 2개 사업자에 대한 지난 재승인은 (주)와이티엔의 경우는 '12년 2월 15일,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서는 '14년 3월 19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승인 심사를 위해서 '16년 8월 11일 「'17년도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을 의결하였고, '16년 9월 9일 (주)와이티엔에서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주)연합뉴스티브이에서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7년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총 5일간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이 기간 중에 대상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먼저 구성과 관련해서 심사위원회는 「'17년도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심사위원장과 분야별 전문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체적인 운영 일정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주)와이티엔은 693.84점, (주)연합뉴스티브이는 688.24점을 획득하였고, 과락 항목이 없으므로 2개 재승인 대상 사업자 모두 재승인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사업자별 심사평가 결과표에서 총점과 심사사항별 점수 그리고 심사사항별 배점에서 몇 퍼센트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심사위원회 재승인 조건(안)은 "2개 사업자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입니다. 심사위원회의 권고사항(안)은 (주)와이티엔에 대해서 공정방송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제작 종사자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서는 최대출자자인 (주)연합뉴스로부터 차별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뉴스를 제공받지 않을 것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적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방송법령 및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실시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승인 대상 2개 사업자 모두 과락 없이 총점 1,000점 중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므로 재승인을 의결하고, 승인유효기간은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주)와이티엔에 대해서는 '17년 3월 13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서는 '17년 4월 1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승인 조건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과 동일하게 부가하고, 권고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고려한 방송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등을 통해 방송의 품격을 제고할 것, 그리고 (주)와이티엔에 대해서는 공정방송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제작 종사자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서는 최대출자자인 (주)연합뉴스로부터 차별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뉴스를 제공받지 않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할 것,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을 의

결해 주시면 바로 승인장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말까지 재승인 심사 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를 공표하고, 5월까지 재승인 백서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1> (주)와이티엔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안), <2> (주)연합뉴스티브이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안), <3> 심사위원회 의견서, <4> 심사평가 항목 및 배점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일주일 동안이나 심사위원들과 함께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신영규 과장이 특별히 또 아주 꼼꼼하게 심사해 줬고, 그래서 오늘 1차로 심사가 끝난, 검토가 끝난 보도 PP에 대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붙임 3>을 보면 심사위원회 심사의 견서가 있습니다. 중점 심사사항으로 보면 시청자 권익보호와 소견을 심사위원들이 올렸습니다. 읽어보면 “보도PP 2사가 시청자센터 등을 통해 시청자 불만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접수된 시청자 불만을 제도나 정책에 반영하는 절차를 보다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제가 조금 있다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사업자별 심사 의견’이라고 (주)와이티엔과 (주)연합뉴스티브이를 별도로 분리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심사위원들이 올린 재승인 조건이나 권고사항 외 추가로 우리가 권고사항들 조건을 부가했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 사업자별 심사의견에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지 않고 넘어가면 실제로 우리가 재승인 조건 부가나 권고사항 부가하는 것만 지적한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사업자별 심사 의견 부분을 나눠서 읽어 주시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주)와이티엔의 경우 공정방송위원회가 부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최횟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과거 YTN 사장 임명 반대 투쟁 중 해직된 기자들의 복직을 대승적 차원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음. 실질적인 시청자 권익보호 조치 계획과 실행보완이 필요하며, 시청자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이 요구됨. 전문PP라 하더라도 20% 이내에서 전문분야 외 편성이 가능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콘텐츠 개발에 임할 필요가 있음. 보도전문채널로서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객관성과 공정성 위반으로 인한 심의제재 발생이 없도록 내부 점검시스템 보완이 요구됨. (주)연합뉴스티브이입니다. 최대주주인 연합뉴스가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만큼 방송의 공적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연합뉴스 대표의 연합뉴스TV 대표 겸임은 방송과 경영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해소될 필요가 있음.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제고가 필요하며 전문성을 지닌 단체의 중복 추천이 불가하더라도 동일 단체 추천 위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역임하는 것은 개선될 필요 있음. 시청자 불만 사유 1인인 패널 관련사항, 2위인 북한관련 뉴스 등을 감안할 때 향후 패널 섭외 시 공정성과 자질, 전문성 확보에 주의하고 특정 분야의 뉴스보도 내용이 과다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실적상 구매비율이 외주 비율보다 높으며, 향후 계획도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유료방송산업의 상생발전과 방송제작산업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이상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우리가 재승인 조건이나 권고사항에 반영은 하지 않더라도 심사위원들이 지적해서 심사 의견으로 올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향후에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심사사항에 올라와 있는 시청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서 시청자 불만 제도나 관련된 정책을 반영하는 절차, 이것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중점 심사사항으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통 권고사항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고려한 방송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등을 통해 방송의 품격을 제고할 것, 이것이 일부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 중점사항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반영이 됐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권고사항에 일부 반영되었고, 지금 와이티엔이나 연합뉴스티브이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불만처리 관련해서 매년마다 불만접수 건수 부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불만처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자별 심사 의견에 나와 있다시피 연합뉴스티브이는 물론 시청자 불만 그리고 그에 대한 민원처리를 성실히 한 것은 사업계획서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그런데 심사 지적된 내용을 보면 연합뉴스의 패널 선정과 관련된 문제들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연합뉴스티브이입니다. 지난 3년간 민원이 총 1,12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 54.67%인 615건이 패널 섭외 관련 민원입니다. 종편이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주도하고 패널 선정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번에 재승인 심사에서 집중적으로 지적되고 개선방안이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합뉴스티브이 같은 경우는 공영뉴스통신사가 1대 주주인 공영언론사입니다. 그런데 패널 선정의 공정성 발언 문제가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편의 문제도 심각해서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는데 공영언론사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는 것은 그냥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물론 권고사항으로 부가했습니다만,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연합뉴스티브이 쪽에서 여기에 제출한 것 말고 추가로 심사과정에서 밝힌 의견이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특별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밝힌 의견은 따로 없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니까요. 권고사항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중점 심사사항으로 되어 있는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정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넣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신 것 같아서 제가 끝까지 고집은 않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추후 재승인 기간 동안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과 관련된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안건 5페이지 검토의견 한번 봐주십시오.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용은 심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우리 방통위에서 위원님들이 오래 논의를 해서 적절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조건이고 어떤 것이 권고사항인지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재승인 조건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과 동일하게 부가하고’ 이렇게만 표시했는데 바뀐 내용이 없어서, 앞부분에 보시면 4페이지에 공통사항으로 심사위원회 재승인 조건(안)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 바뀐 내용이 없어 따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저는 내용에 변동은 없지만 재승인 조건은 사업자 공통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고, 권고사항은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에 각각 한다라고 여기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승인유효기간 관련인데 지금 여기에 승인유효기간은 무엇무엇을 위해서 와이티엔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연합뉴스티브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승인유효기간 문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간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검토의견에 정리상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일단 기간을 얼마로 한다, 이것이 우선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기간을 두 사업자 공히 왜 3년으로 한다, 그런데 시기와 종기가 3년으로 한다 하고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한다, 이것이 저는 이 안건에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와이티엔은 그 전에 유효기간이 5년이었고, 연합뉴스티브이는 3년인데 이번에 날짜 수로 따지면 조금 차이는 있지만 두 사업자 공히 공통적으로 3년으로 한다는 뜻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거기에 대해서는 왜 3년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여기에 명시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행을 실효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승인 기간을 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취지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논의를 할 때 저는 이 표현이 '승인유효기간은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이 말이 저는 아주 막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3년으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사업자 공히 재승인 유효기간의 종기를 일치시킨다. 왜 일치시키느냐? 그러면 실효성 담보를 위해 무엇을 보장하기 위해 그렇다고 명시가 됩니까? 제 의견은 결론적으로 사무처의 검토의견 내용에 대해서 다른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을 잠깐 정리하면 지금 재승인 유효기간 관련해서는 기간에 대해서 더 상세히 쓰기는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종기를 일치시키는 사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승인 조건과 그다음에 권고사항과 관련해서 여기 '재승인 조건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과 동일하게 부가하고' 이렇게 한 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아마 시각적인 효과 면에서 그런 면이 잘 안 보인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것이니까 그것은 수정하고, 그다음에 종기를 일치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절차적인 면이 아무래도 좀 더 강하겠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사실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20일도 차이가 안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관리의 용이성 측면에서 보면 일치시키는 편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판단했는데 기본적으로 3년을 준다는 개념 자체는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종기를 일치시키는 그 표현을 적절하게 해서 한 구절이라도 집어넣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곤란합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아닙니다. 갑자기 어떤 문구를 넣을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요.

○ 최성준 위원장

- 그 문구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사무처와 상의해서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괜찮으십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예, 그러시지요.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승인유효기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승인유효기간은 방송법상 5년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5년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5년 이내에서 하는데...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고, 만족스럽다면 5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족스러운 심사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드물기 때문에 시정해야 할 지적사항은 많고 조건부나 권고사항은 많아서 대체로 2년 정도를 단축해서 3년으로 많이들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 조건부나 권고사항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했다면 5년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라도 점수를 잘 받았고 지적사항이 적고 잘 해 왔으면 꼭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행정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쁘게 이야기하면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일치시키는 것보다는 방송정책상 잘하는 방송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는 사전에 많이 분석했고 논의했습니다만 그렇게 특별한 차별성이 드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치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원칙적으로 심사결과를 놓고 잘한 데 대해서는 그만한 보상이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일치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방송 정책방향으로서 잘하는 방송사에 대해서 격려하고 성원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보상에 주는 것이 더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요소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려들을 놓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보도PP 2개는 그렇게 큰 특별한 차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인유효기간을 3년으로 맞춘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번에 5개 종편과 보도 PP 대상으로 심사를 했고 그것을 의결해야 하는데 우선 보도PP 2개만 의결하는 것입니다. 이 2개를 놓고 차등화시킬 필요성을 꼭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김에 심사위원들의 심사의견서 내용을 보니까 와이티엔의 경우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다 읽었는데 사장 임명 반대 투쟁 중에 해직된 기자들의 복직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결 나왔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6명의 해직기자 중에서 3명은 해직이 부당하다고 복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3명은 그대로 인정된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법적인 판결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닌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장 임명 반대 투쟁은 왜 일어났는가? 원인 제공은 저는 정치권, 정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대통령 정부쪽이 원인 제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기자들, 직업 언론인들이 자기 직무를 수행하다가 언론자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다가 방법이 잘못됐거나 해서 강제해고 당했고 법정에서도 그런 연유로 해서인지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은 그러나 언론계에서, 와이티엔 그 회사에서, 여기 심사위원들 의견 '대승적 차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원인과 투쟁이라고 할까 싸움, 시정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궁극적인 국민통합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화해와 통합을 위해서 이때 해직된 기자들에 대한 복직을 내리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 봤자 결정권을 가진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심사위원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점에서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와이티엔의 문제는 보도전문채널, 보도전문채널은 종편과 다르게 보도전문편성을 80% 이상 하게 되어 있고 90% 안팎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방송언론입니다. 종합편성이 아닙니다. 방송언론인데 그러면 그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객관성·공정성을 위반하면 안 된다, 특별히 심의제재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의견이 들어가 있지요? 언론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지키기 위해 더 각별히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저도 심사위원들의 의견에 100% 이상 동의하고 그렇게 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연합뉴스티브이입니다. 역시 아까 읽은 것처럼 최대주주 연합뉴스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매체이지요? 그런데 연합뉴스티브이는 최대주주가 연합뉴스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공적책임 크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최대주주인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합뉴스 사장이 연합뉴스티브이 사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단계도 아직

진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와 연관되기도 하지만 자체 계획서 안에 포함된 것인데 시청자 불만 여러 사유 중에서 1위가 출연진 패널에 대한 불만입니다. 몇 퍼센트 나왔지요? 그 연합뉴스티브이 자체 시청자 불만접수 건 중에 56%를 넘었습니다. 이것은 56% 이상이 출연진에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으면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다고 다 공영은 아니지만 공영방송이 잘못되면 관영방송, 공영·관영이 잘못되면 어용입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그런 매체라고 할 수 있는데 재승인·재허가를 안 받으면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매체도 있지 않습니까? KTV도 있고 아리랑TV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독립적인 방송매체로서 자유와 독립성을 확보하고 제 역할을 해야 할 텐데 또 정부로부터 그렇게 재정지원을 받는 연합뉴스가 최대주주이면 특별히 독립성과 공정성을 조심해야 하는데 시청자 불만사유의 1위로 56% 이상으로 패널 구성이 편향되어 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흔히 이야기하는 여야와 또는 진보·보수와 다양한 패널 구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사토론이나 대담프로그램에서 찬성과 반대가 최소한 균형 있게 구성되는 패널이어야 할 텐데 그렇게 안 된다는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의 최대주주인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재정지원한 정부, 정권의 입장을 홍보하고 주장하는 그런 방송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차후로도 앞으로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승인유효기간은 역시 3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3년 내 제대로 개선이 되는지를 확실하게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와이티엔의 경우 점수도 상대적으로 연합뉴스티브이는 잘 나왔고, 지적사항도 적은 편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인유효기간 같은 데서 차별화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심사위원회의 의견과 지적 내용을 향후 3년 동안 승인유효기간 동안 제대로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보도전문채널 두 군데에 대한 오늘 의결사항입니다. 종편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심사대상이 된 5개 매체가 모두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문제가 시청자 의견을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면 역시 과도한 보도프로그램에 따른 출연진들의 공정하지 못한 발언들, 아니면 말고식의 터트리기식의 그런 출연진들의 연사로 인해서 많은 시청자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약 32,000건~33,000건에 달하는 그런 민원들이 폭주하는 것도 다 여기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전문채널은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또 보도의 비중이 더 많은 그야말로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언론기관입니다. 언론기관의 공정성은 가장 큰 가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연합뉴스가 시청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정하지 못한 패널 출연진 선정이 적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와이티엔도 그런 통계를 스스로 우리에게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서에 와이티엔도 이런 시청자들이 패널 출연진들

이 공정하지 못하게 선정되고 있다, 그런 민원이 접수된 실적 같은 것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와이티엔도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보면 방송내용에 관한 민원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외부 출연자, 그다음에 앵커의 문제, 편성의 문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비율도 다 나와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런데 외부 출연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하면 전체 건수 233건 중에 방송내용에 관한 부분이 188건, 외부 출연자에 대한 부분이 16건으로 상당히 적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어느 한 언론매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 공통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번 기회에 그런 시청자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자별 심사 의견을 보면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객관성과 공정성 위반으로 인한 심의 제재 발생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심의제재건수가 나와 있지 않은데 혹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갖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가 이런 공정성 논란으로 인해서 심의제재를 받은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지금 연도별로 보통 3건에서 4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공정성이나 객관성 위반에 관한 건은 상당히 적습니다. 1건 내외로 아주 적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종편에 비해서는 비교적 건수가 아주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론기관으로 보도전문채널을 허가해 줬고 또 언론기관으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출연진의 또 패널의 선정 문제,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 또 한 쪽으로 편중·편향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이런 점을 양쪽 모두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에 공통으로 권고사항에 넣은 것은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최대주주인 연

합뉴스가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있어서 방송의 공적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끔 연합뉴스로부터 독립된 운영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이 권고사항으로 연합뉴스티브이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도 역시 적절하게 그런 공적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권고사항에 넣었는데 재승인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권고사항으로 넣었으면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그런 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조건으로 붙는 것과는 다른데 실무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권고사항으로 반영하게 되면 다음 재승인 심사 때 저희가 재승인 조건이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하게 되고, 지금 현재의 심사기준에 따르면 70점이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권고사항에 들어가도 분명히 평가를 받고 또 점점을 받아서 다음 심사 점수에 반영되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심의제재 건수가 종편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또 가장 균형된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방송을 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위반사례가 없도록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까 한 부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와이티엔이나 연합뉴스티브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공정성·객관성 등을 이유로 해서 법정제재를 받은 것은 아까 1년에 1건 내외 정도라고 말씀하셨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1건 내외'라는 것은 없기도 하고 1건 있기도 하고 2건….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없기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 최성준 위원장

- 2건까지도 있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제 기억으로는 연합뉴스티브이를 예를 들면 지난 2년간 심의와 관련해서 법정제재를 받은 목록을 봤을 때 2년 동안 객관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가 1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다른 경우였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연 1건 있거나 없거나 그 정도로 보면 됩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시청자 민원 관련해서 연합뉴스티브이와 와이티엔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시청자 민원이 더 많이 몰려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연합뉴스티브이가 다소 많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몇 건 정도 차이가 납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다소 많은 것이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14년, '15년, '16년치를 보니까 와이티엔은 '14년 291건, '15년 233건, '16년 214건이었고, 연합은 '14년 372건, '15년 392건, '16년 361건이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약 100건 정도 차이가 나는군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100건 정도 더 많았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어디에 접수된 것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각 방송사에 접수된 내용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시청률은 어떨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시청률은 연합뉴스티브이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아까 민원 중에서 패널 섭외 관련한 민원만 분리·비교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분리·비교할 수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몇 건씩 되는지 연도별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이티엔 같은 경우에는 패널에 대한 부분이 건수가 아주 작고, 연합뉴스티브이가 패널에 대한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비중 자체가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와이티엔의 경우에 스스로 분류해 온 것인데 그 내용 중에 아까 233건 중 188건이 방송내용에 관한 민원이라고 했고 16건은 패널이라고 분류를 했는데 이것이 방송내용과 패널이 정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연합뉴스티브이는 방송내용에 관한 민원이라는 것이 따로 항목이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분류기준이 없는 것이어서 그것을 자체적인 분류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기는...

○ 고삼석 상임위원

-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소재 선정이 있습니다. 내용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패널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방송내용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패널 출연자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그것이 출연자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분류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소재 선정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앞으로 저희가 향후에라도 각 방송사에 접수되는 시청자 민원의 성격을 파악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려면 이런 분류기준도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가능하면 저희가 조금 행정지도를 해서 비슷한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각 방송사의 상황을 평가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제로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행정지도 형식으로 해서 분류기준 같은 것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시청자 민원 들어온 것들 중에 어쨌든 패널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방송사에서 출연자 선정을 할 때 전문성·공정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품격을 높여 달라는 것을 넣게 된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시청자 불만처리 문제, 제가 두 사업자 자료를 보면 경향은 제너럴하게 연합뉴스티브이가 많다, 이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비교 준거 틀이나 객관적인 분류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가 어디보다 훨씬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아서 제가 심사항목을 보니까 시청자 권익 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이 있는데 이것과도 관련이 있고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국민들, 시청자들 권익 증진 보호 차원에서 시청자 불만 처리 그 문제는 그야말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지상파, 종편·보도PP 이렇게 따로 할 것인지, 저는 차제에, 오늘 안건 중에 「시청자평가원 선임 운영 가이드라인」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시청자 불만처리 문제, 이것야말로 정말 방통위가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정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제안을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잠깐만 말씀을 보태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지금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에서 각각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건수가 다릅니다. 시청자 민원이 어느 쪽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면 출연자 패널 선정 문제가 공정하지 못하다, 너무 편향된 패널이 많다 이런 통계를 스스로 분류할 때 그 방송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항목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과 이기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저도 긴급제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기준을 통일되게 만들어서 다음 심사할 때 그것을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서 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지금부터라도 그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분류해 나가는 작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짧막하게 제가 같이 없어서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안건을 사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승인 유효기간이나 출연자 선정과 관련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다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까지 제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심사위원들의 직접적인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붙임>에 나와 있는 심사위원회 의견을 보면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종편PP뿐만 아니라 보도PP들도 방송광고 영업, 협찬 유치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잡음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 방송광고의 필요나 효과와 무관하게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협찬효과와 무관하게 혹은 전혀 방송에 노출되지 않는데 언론사와의 관계 때문에 협찬을 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들이 여전합니다. 종편PP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또 저희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제재해서 제도개선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도PP는 미디어랩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영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이러한 강압적인 방송광고영업이나 협찬유치는 작은 언론사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승인해 준 사업자가 민간기업의 활동에 부담을 주면서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시장질서 훼손뿐만 아니라 법 위반의 소지도 다분합니다. 경영상태를 고려하더라도 공영 언론사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미디어랩을 통하지 않고 직접 광고영업을 하는 보도PP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제안했지요. “보도와 방송광고영업·협찬유치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 제고를 할 것, 이 부분을 재승인 조건이나 권고사항으로 부가하자” 그렇게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위원님들의 이견으로 제가 관철을 못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승인 조건이나 권고사항으로 부가는 하지 않

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제재를 하고 또 필요하면 제도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사업권을 줬는데 그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방송을 영위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존재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한번 더 검토해 주시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희가 사전적으로 논의도 많이 했지만 고 위원님의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제가 우리 보도PP에 대한 심사항목, 심사사항을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광고영업, 협찬유치 등에 있어서 불공정하다라든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에 관해서 조건이나 권고 형태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심사 제도상 저는 근거가 적절치가 않다, 그런데 저희가 종편 같은 경우도 미디어랩이 있고 지상파 같은 경우에 또 별도로 코바코가 있는데 저는 차제에 광고유치라든가 영업에 있어서 공정성 질서 확립 차원에서 방통위가 전반적인 방송광고시장과 관련된 그런 실태 파악이라든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미디어랩법상 금지행위도 있고 방송법상 금지행위도 있지만 지금 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보도PP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차제에 한번 사무처에서 전반적으로 방송광고 유치영업 내지는 이와 관련해서 실태파악도 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처장님,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에 보태서 물론 미디어랩을 갖고 있지 않은 보도PP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미디어랩이 있더라도 지금 경로만 약간 다를 뿐이지, 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또 이기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기주 위원님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마 방송정책국도 일부는 관련이 되지만 방송기반국의 방송광고정책과가 또 많은 업무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무처장님에게 종합적으로 의견을 여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도PP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상파방송이라든지 종편·보도PP 다 총괄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종기 사무처장

- 지금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일단 실태점검부터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는 실태점검하고 그 결과 현행법상 위반으로 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일단 조치하되, 대부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현행 법령상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도개선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도개선을 검토하실 때 제 생각에는 법률에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것 외에 보도PP의 경우에 이런 것이 마땅치가 않다면 방송정책국에서는 시장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할 때는 저는 심사항목에 그러한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사무처장님이 방송기반국과 같이 실태파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제도개선 하는데 다른 것이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정종기 사무처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 문제에 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사업자 전반에 대해서 보도 언론 기능과 광고 수주에 대해서 기획조사라고 할까,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게 된 계기는 미디어랩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직접 광고수주 영업을 하는 보도PP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요. 그런데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이슈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고 이것이 언론 윤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도와 광고를 맞바꾸느냐, 아닌 말로 바꿔 먹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기사를 취재해 놓고 '이것 널 것인데' 그러면 기업주들은 그것을 달래느라고 '광고 줄게' 비판보도를 빼 달라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언론 윤리 문제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또 어떻게 금지되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론자유의 발전사는 처음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이지만 그다음에는 사내 사주로부터, 경영진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이야기한 광고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금력으로부터 자유인데 바로 광고주 금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언론인 스스로가 저버리는 행위가 지금 이야기 나온 보도와 광고를 맞바꿔 먹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점검 조사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기획점검, 기획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방송광고 제도를 개혁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종편은 처음부터 1사 1미디어랩을 허가해 줬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PP는 미디어랩도 없이 직접 광고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특히 시비까지 일어났습니다. 저는 두 번째 개선방안으로 종편미디어랩 1사 1광고대행사로 되어 있는 것을 통폐합하고 보도PP 2개도 역시 미디어랩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6개의 PP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랩을 설립하는 법률개정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개혁 개선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영관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저희 국 소관은 아니라고요.

○ 김재홍 부위원장

- 사무처장께서….

○ 정종기 사무처장

- 랩 제도 전반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방송계를 포함한, 전체적으로 산업이나 여러 가지 사회 역학적인 관계를 다 봐가면서 법률로 정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 차원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고 그런 문제점은 다 논의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미디어랩법 법률개정안을 낸다면 소관부처는 방통위 아니겠습니까?

○ 정종기 사무처장

- 그렇습니다. 정부안으로 만든다면 방통위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부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그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이 심각한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능동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하고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이것이 법 개정 문제까지 나오게 되면 여러 단계, 저희들의 사전적인 연구 또 그다음에 사전적인 실태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사무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PP뿐만 아니고 지상파나 또는 종편 다 포함해서 방송사와 광고주 사이에서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상 지금 방송법이나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방송사와 광고주 사이에 그런 불공정한 또는 일종의 부당한 계약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금지행위나 또는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 특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개정안을 만들려면 그런 실태가 먼저 파악되고 선행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것과 동시에 병행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그것도 또 선행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거쳐서 방송사들이 방송사업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서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이런 불공정한 문제들이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하는 것을 사무처장님께서 챙기셔서, 주로 기반국과 정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종기 사무처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제안한 사안과 문제의식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문제제기는 됐다고 생각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그것을 재승인 조건이나 권고사항에 꼭 반영하자는 고집은 하지 않겠습니다.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많은 논의를 해 주셨고, 또 재승인 조건이나 또는 권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로서도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또 많은 유익한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하면 아까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중기를 일치시키는 표현의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문구를 나중에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하도록 하고, 그 이외에 가장 핵심이 되는 두 보도PP의 재승인 조건, 그다음에 권고사항, 그다음에 승인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이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그 중간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인정기준(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인정기준(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배경입니다. 지상파 UHD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UHD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신규허가 조건을 부가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당시 허가 조건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UHD 프로그램을 2017년 5% 이상, 2018년 10% 이상, 2019년 15% 이상 편성할 것’입니다. 인정기준(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정의입니다. 영상신호 형식과 관련

해서는 순차주사 방식으로 주사선 수가 2,160, 주사선에 포함된 화소수가 3,840(이하 “4K”라고 한다) 이상인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단위 방송프로그램의 50% 이상이 4K화질 이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다음 방송시간 50% 추가 인정기준입니다.

(고삼석 상임위원 퇴장)

지상파 UHD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드라마, 다큐멘터리, 국민 관심행사(올림픽, 월드컵)의 중계 프로그램 및 외주제작 프로그램, 그리고 주시청 시간대에 편성되는 UHD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50% 추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복방송에 대해서는 재방송을 초과한 반복 방송 시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방송 UHD 프로그램의 편성 시간은 '17년 100%, '18년 50%, '19년 30%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가공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기준입니다. 영상의 화소 수를 단순히 증가시키는 업스케일링에 대해서는 UHD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리마스터링 UHD 프로그램의 편성시간은 '17년 100%, '18년 50%, '19년 30%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단, 국내에 방송되지 않은 리마스터링 프로그램은 신규제작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작여건을 고려해서 HD/UHD 채널에 드라마를 동시 편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HD로 방송한 후 7일 이내에 UHD로 방송하면 초방에 대해서는 UHD 본방송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UHD 프로그램은 방금 정의규정에서 보고드렸듯이 50% 이상이 4K 영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제작 초기 여건을 고려해서 50% 미만이 4K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4K로 방송된 시간만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UHD 프로그램 편성비율의 집계 주기는 분기별로 하고 의무 편성비율의 준수 여부는 연간 편성실적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방송사가 수중계하는 UHD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그대로 인정하고, 가중치·리마스터링·반복방송 인정기준도 수도권 지역 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정기준의 적용시점은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 본방송이 개시되는 '17년 5월 3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을 접수해 주시면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인정기준을 대상 지상파방송사에게 통보하고 5월 31일부터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특별한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인정기준을 만들면서 지상파방송사들과 충분한 협의는 한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의견수렴 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물론 지상파방송사가 원하는 대로 기준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서로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고 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된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접수하겠습니다.

나. 「시청자평가원 선임 및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나> ‘「시청자평가원 선임 및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자평가원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청자평가원 선임 및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배경은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89조에 따라 시청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청자평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청자평가원 선임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어 방송사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청자평가원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진경과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적용대상은 방송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청자평가원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와 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및 시청자평가원이 되겠습니다.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및 자격 관련입니다. 선임과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전문성, 시청자 대표성, 전문분야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하고, 임무·역할·보수·법적 근거를 포함한 시청자평가원 제도를 해당 평가원에게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지만 반복 선임으로 인해 비평의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격사유로는 ‘정당법에 의한 당원’, ‘공무원’, ‘해당 방송사의 임직원 및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타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위원 및 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 중인 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평가원의 직무 및 운영 관련입니다. 시청자평가원의 직무는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방송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해 시청자 의견을 진술하고, 시청자위원회 요청 시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평가원의 직무 수행을 적극 지원하고 직무 수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오늘 보고드리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준해서 방송사별로 내규를 제정하고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청자평가원이 「시청자평가원 월간 보고서」의 정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하도록 하고, 「시청자평가원 월간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가이드라인(안)을 접수해 주시면 3월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급한 일정 때문에 자리에 안 계시지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고삼석 위원께서 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해서 가이드라인 심의를 충실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내용은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방송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방송사별로 기준이 없어서 시청자평가원 제도가 달리 운영되고 있다, 제대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아까 시청자 불만처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음번 재승인 심사 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도, 또 방송사를 위해서도 시청자불만처리센터 내지는 운영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바로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마 이기주 위원님 처음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이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방송법이나 또는 방송법 시행령으로부터 고시 제정을 위임받지 못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가이드라인이 아닌 최소한 고시 정도로는 운영을 하면서 좀 더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시청자위원회도 방송법 제89조에 근거한 것입니까? 시청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 류재영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시청자위원회는 제88조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다른 것입니까?

○ 류재영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제88조, 제89조가 주로 시청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 문제네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공정방송위원회도 있고 편성위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시청자평가원 운영 문제를 가이드라인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법령의 근거가 낮은 것 아닌가, 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방송법을 개정해야 합니까? 최소한 시행령 정도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이드라인 내용은 좋은데 이것을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까? 말하자면 시청자평가원에 대한 시행령을 둘 모법 근거가 없는 것입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오늘 보고드린 시청자평가원 선임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면 일단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방송법에 그런 기본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대략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담고 지금 보고드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고시로 하는 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여기에 보면 '방송법 제89조에 따라 시청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청자평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렇게 법적 근거를 밝혔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이나 고시를 제정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시청자평가원 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은 방송법에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선임할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위임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법적 근거를 격상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마련하는 작업도 해야겠네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비록 그 이전단계라도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에 있어서 이것은 방송사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 사실상 방송사들과 합의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 **류재영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의견수렴을 거의 1년에 걸쳐 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방송사들에서 이 가이드라인 중에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지요?

○ **류재영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이견이 있는 부분은 조율하고 일단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송사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반영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방송사들이 크게 이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 가이드라인대로 우선 방송사들이 시청자평가원을 운영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그다음에 올해 법이나 시행령의 근거규정을 만들면서 이것을 고시 등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같이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올해 확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류재영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3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7년 제1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2시 00분 폐회 】